

동두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3.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3. 11

다. 상정일자 :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관련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시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10이상 1천분의 70이하의 금액으로 함.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50이상 1천분의 70이하의 금액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1999. 4.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신설되었고, 2000. 1. 12일 법률 제6132호로 제9조 및 제11조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2000. 10. 23일 대통령령 제 16990호로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전문개정으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 사용금액의 산출근거인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이 완화 되어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반대토론 :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으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예술진흥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의 산출근거인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에 대하여 개정 하려는 조례안이나, 미술장식품 사용금액의 산출근거인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을 법령에서 위임된 하한선 범위규정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6조 제1호의 내용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제2호의 내용중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을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의 금액”으로 수정코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 출 안	수 정 안
<p>제2조 ~ 제3조(생 략)</p> <p>제6조(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생 략)</p> <p>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 분의 7이하의 금액</u></p> <p>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 호의 건축물 : <u>건축비용의 1천분 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금액</u></p>	<p>제2조 ~ 제3조(제출안과 같음)</p> <p>제6조(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출안과 같음)</p> <p>1.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의 금액</u></p> <p>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 호의 건축물 : <u>건축비용의 1천분 의 5이상의 금액</u></p>